2024학년도 지스트 입학전형 시행계획(안)



2022. 4.

지스트 입학학생처

1.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종합)	일반전형	125명 내외
기초교육학부			학교장추천전형	40명 내외
			고른기회전형	15명 내외
		실기위주	특기자전형	10명 내외
	정시모집	수능위주	수능우수자전형	10명 내외
	200명 내외			

[※] 수시모집 6회 제한 예외 대학 / 정시모집 군외 대학

2. 지원자격

의반 전형 기준 구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따름) ③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자 ④ 2023년 「지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학교장추천 전형 조업예정자 ※ 고등학교별 추천인원 : 2명 이내 [저소득가구 학생]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형 I 또는 유형Ⅱ 또는 Ⅲ에 해당하는 자 ①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따름) ③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자 ▼ 유형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자에 의한 대상 가구 학생 ▼ 유형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자에 의한 대상 가구 학생 ▼ 유형Ⅲ: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제 20호(자상) 제 20 대상 가구 학생 ▼ 유형Ⅲ: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제 2호(자상) 제 20 대상 가구 학생 ▼ 유형Ⅲ: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제 3조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 구가보훈대상자 1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고원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①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등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따름)	전형		내용
고른기회 전형	수시	일반 전형 학교장추천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에 따름) ③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자 ④ 2023년「지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일반·자율·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별 추천인원 : 2명 이내 [저소득가구 학생]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형 I 또는 유형 I 또는 Ⅲ에 해당하는 자 ①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에 따름)
③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 유형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 가구 학생 √ 유형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 가구 학생 ✓ 유형 II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 유형 II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I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①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202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따름)

[※] 지원자 중 지스트에 인재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			내용	
		[농·어촌 학생] - 202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유형I 또는 유형표에 해당하는 자		
	고른기회 전형	 √ 유형 I: 농·어촌 중학교 3년+농·어촌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6년 (중학교 입학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지원자·부모 모두) √ 유형 II: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초등학교 입학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지원자가 농어촌 거주)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 		
	특기자 전형	마 다음 우수 ① 2024 ② 2024 (「초 ③ 「조: 또는 활동 수상 기타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등 특정분야 및 다양한 분야의성을 나타내는 자4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에 따름)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부위분야 예시 내용	
정시	수능우수자 전형	[국어 1) 수학 2) 탐구 - 예:	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 수학 ¹⁾ , 영어, 탐구 ²⁾ ,한국사] 5개 영역의 성적을 취득한 자 : 공통 + 미적분, 기하 중 택 1 : 과학탐구 영역 중 서로 다른 분야의 2개 과목 응시 물리학 I + 물리학 표 불가 물리학 I + 화학 I, 물리학 I + 화학 표 가능	

3. 전형 요소 및 방법

■ 수시

구분		내용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면접전형	선발인원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4~5배수 내외	
	전형방법	서류 종합평가 100%	
	대상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전형방법	□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 지스트 이공계 인재적합성(전공수학능력 및 내적역량)을 종합평가 □ 특기자전형 □ 특기 내용 검증 및 우수성을 확인하고, 내적 역량을 종합평가	
최종합격자선정		□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서류 60% + 면접 40% □ 특기자전형: 특기종합평가 100%	

■ 정시

구분	내용				
 선발인원	10명 + 수시 이월인원				
	□ 수능우수자전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100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 및 점수 활용방법				
	반영비율	활용 점수	세부 사항		
	국어 100	□표준점수 활용			
전형방법	영어 100	- 등급에 따른 환산점 반영	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 100 97 91 82 70 55 40 25 10		
	수학 150	□ 표준점수 활용 □ 등급에 따른 감점 활용	- 수학영역 감점 방법 등급 1 2 3 4 5 6 7 8 9 감점 - 5 6 7 8 9 10		
	탐구 150	□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 ¹⁾ 활용 □ 등급에 따른 감점 활용	□ 과탐 Ⅱ과목 응시할 경우 해당과목 변환표군점수의 10% 가산 □ 과학탐구영역 감점 방법 등급 1 2 3 4 5 6 7 8 9 I과목 - 4 5 6 7 8 9 10 □과목 - 5 6 7 8 9 10		
	한국사 최대57	- 등급에 따른 가산점 반영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 5.0 4.5 4.0 3.5 3.0 2.0 1.0		
	1)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이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최종성적 산출 방법	국어영역 산출점수 ¹⁾ + 영어영역 산출점수 ²⁾ + 수학영역 산출점수 ³⁾ + 과학탐구영역 산출점수 ⁴⁾ + 한국사 산출점수 ⁵⁾ + 고교 교과이수 가산점 1) 국어영역 산출점수: ^{국어영역취득표준점수} × 100 2) 영어영역 산출점수: 등급별 환산점 3) 수학영역 산출점수: 수학영역취득표준점수 - 등급별감점 수학영역최고표준점수 (탐구1과목변환표준점수 - 감점) + (탐구2과목변환표준점수 - 감점)				

※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본교 입학정책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